

# 2017년 수원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 I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 수원문화재단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고유목적 사업과 수탁사업 추진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
- 다양화되는 문화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 서비스 제공

###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수원문화재단 업무 전반
- 감사범위 : 2015. 4. 1. ~ 2017. 4. 14.

###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7. 4. 6.(목) ~ 4. 14.(금) [7일간]
- 감사인원 : 감사관 등 9명 (시민감사관 5명 별도)

### 4. 감사 중점사항

- 조직 및 인사관리 분야
- 재정운영(예산, 회계, 계약, 재산관리 등) 관리 실태 전반
- 수탁사업, 보조금사업 추진 및 정산의 적정성
- 기획공연 등 공연관련 분야
- 공연장 대관업무 및 시설관리 분야
- 기타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 전회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

## II

# 감사대상 현황

### 1. 연혁 및 특성

- 2012. 2. 20. (재)수원문화재단으로 출범하여 수원시 문화정책 사업과 관광활성화 사업, 문화예술의 창작·보급사업 등을 전개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복지 구현에 기여
- 주요 추진사업으로 수원화성문화제, 수원연극축제, 수원재즈페스티벌, 수원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수원 SK아트리움 및 어린이도서관(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수탁운영, 전통식생활체험관·예절교육관을 개관하여 운영하는 등 눈이 즐거운 문화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음

### 2. 기본현황

- 조직 및 인원 : 2국 1실 5부 1관 18팀, 정원 169명(현원 164명)

- 예산 편성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비고
출 연 금	15,586	16,284	15,237	
민간위탁금	3,888	3,388	2,507	

### 3. 위·수탁 사무 현황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시행
- 수원화성시설, 문화공간의 운영·관리 및 수익사업
-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연, 관광안내, 콘텐츠 개발
-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 수원SK아트리움 운영관리
- 어린이도서관(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운영관리
- 수원전통문화관 운영관리 등



## 감사결과

### 1. 감사총평

#### ○ 감사의 특징

- 문화재단이 그간 고유목적사업과 수탁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하였는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로 불합리한 문화재단 운영과 예산 낭비 요인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 관행적인 행태 등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의 개선방향을 찾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음

#### ○ 잘된 점

-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마케팅 서비스를 강화 하였으며 투어와 공연이 조화된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음
- 일상 속 쉽고 재미있는 문화예술 참여 및 관심을 위해 예술단체, 신진 예술가 지원 등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또한 출연금 축소에 따른 문화예술 및 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재단 재원확보의 다양성을 도모하였음

#### ○ 미흡한 점

- 시 행사성 사업이 재단 내 대행사업 등으로 촉박하게 편성되어 관련 부서 협의 및 사전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사업추진이나 정산 등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 미숙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다수 있었음

- 각종 문화행사 추진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세의 수입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 금고 마감 전까지 입금하여 수입금을 관리해야 하나 정해진 기간 또는 절차 없이 세입 처리하는 등 수입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 또한 직원 공개채용에 있어 심사위원 서류전형 심사 시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배점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사의 공정성·형평성 훼손의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 ○ 앞으로의 과제

- 이번 감사 시 지적된 법령 위반과 예산낭비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현실과 업무여건 상 맞지 않는 규정은 조속히 제·개정하여 재단의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한 개선이 요구됨
- 위·수탁에 따른 대행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및 절차 이행은 물론 인력, 예산 등을 고려한 사무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 주관부서와 재단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절실히 필요함

### 3. 주요 지적사항

#### □ 일반행정 분야

제목	<b>자체감사 업무 소홀 (no. 2)</b>
처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에 의거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후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직원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li> </ul>
위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도 연간 감사계획 미 수립 후 2016.○.○.~○.○.까지 ○일간 일상경비 집행실태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개월이 지난 2017. ○.○.일 결과 보고를 하였으며, 매년 1회 이상 부패 취약 시기에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수시점검 하여야 함에도 2015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고, 2016년에만 1회 실시 하는 등 자체감사 활동 및 행동강령 업무 소홀</li> </ul>
처분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감사활동 및 행동강령 규정에 의거 연간 계획수립, 감사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매년 1회 이상 부패 취약 시기에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도록 <b>주의</b> 및 <b>관련자 주의</b> 조치</li> </ul>
제목	<b>직원 공개채용 기준마련 소홀 (no. 9)</b>
처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의거 재단 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응시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에서는 심사위원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심사하고, 2차 인·적성검사에서는 채용전문업체에 의뢰한 인·적성검사 결과를 반영하며, 3차 논술 및 면접에서는 심사위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정도 등을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li> </ul>
위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서류전형에서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배점기준(평가표)을 마련하지 않아 정량적 평가에 의해 점수가 부여되어야 할 항목에서 심사위원별 자의적 판단으로 점수가 부여되어 서류전형의 투명성·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 초래</li> </ul>
처분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채용절차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험 응시자의 공정성·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채용절차 <b>개선 요구</b></li> </ul>

제목	<b>근거 없는 개인정보 보유·수집 부적정 (no. 28)</b>
처리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
위반 내용	· 화성마케팅부, 문화사업부, 공연사업부에서는 대다수 업무 처리 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복사하여 수시 열람이 가능한 지출서류 등에 편철·보관
처분 지시	· 현재 편철·보관중인 개인정보 보호 및 향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b>개선 요구</b>

## □ 재산관리 분야

제목	<b>대부료 산정 부적정 (no. 4)</b>
처리 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토지는 재산가격 결정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첫째연도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연도 이후의 기간의 대부료는 관련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 ·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하며,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한다고 규정
위반 내용	· ○○○○○, ○○○○, ○○○, ○○○○의 대부료 산정 시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이 아닌 감정평가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입찰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고, 2차연도에는 관련 계산식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해야 하나 첫째연도와 동일하게 대부료 산정 · ○○○○ 대부면적 산정 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축법에 따라 산정해야 했으나 바닥면적만을 부속토지로 하여 대부면적 산정
처분 지시	·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정확하게 대부료를 산정하도록 <b>주의 조치</b>

제목	<b>월 주차요금 징수 부적정 (no. 7)</b>
처리 기준	· 「○○○○ ○○○ ○○ 운영 조례」에 따라 수원화성 및 부대시설을 관람 또는 사용하고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위반 내용	· ○○○○재단에서는 화성행궁과 연무대 주차장 등 2곳을 운영하고 있고, 이용자 중 30명의 직원 및 주민의 주차요금을 월별로 징수하지 않고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주차요금을 선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관리함에 따라 중간에 사용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환급이자를 더해서 주차요금을 환급해 줌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
처분 지시	· 앞으로 주차요금을 월별로 징수하여 환급 시 불필요한 환급이자가 낭비되지 않도록 <b>주의</b> 조치
제목	<b>화성관람료 매표 및 검표 소홀 (no. 8)</b>
처리 기준	· 「○○○○ ○○○ ○○ 운영 조례」에 의거 수원화성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매·검표소에 납부해야 하고, 수원화성 및 부대시설물을 관람하는 사람은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 구입한 관람권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위반 내용	· ○○○○재단 ○○○, ○○○, ○○○, ○○○ 등 4곳의 매·검표소를 운영하면서 8명의 운영직 직원들이 매표 및 검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매·검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입장료 수입이 대폭 감소(2012년 대비 ○○% 감소)
처분 지시	· ○○관람료 감소에 따른 매표소 운영 방법과 효율적인 검표 방법 등 문제점 파악 및 종합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b>시정</b> 조치
제목	<b>전시공간 대관 소홀 (no. 14)</b>
처리 기준	· 「○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개방 장소, 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에 공지하여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공시설을 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사용자가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
위반 내용	· ○○전시실 대관 시 공고 절차 없이 반기별로 사용자를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시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 갤러리 대관 시에는 대관에 따른 전기세 22건 1,672천원(2015. 3월. ~ 감사일 현재)을 부과하지 않는 등 예산을 낭비
처분 지시	· 앞으로 대관 시 공고 절차를 통해 대관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관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b>시정</b> 조치

## □ 예산·회계 분야

제목	<b>순세계잉여금(불용액) 과다 발생 (no. 1)</b>
처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출연금 편성 시에는 경영혁신 기조 유지, 조직 및 인력 증가를 최소화하고 원칙적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인건비가 과다 증액되지 않도록 유의함은 물론 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 중복여부, 사업효과 등을 엄격히 평가하여 요구하되 계속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구하도록 규정</li> </ul>
위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단에서는 사업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2014~2016년까지 수원시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에 대한 정산 시 〇,〇〇〇천원에 상당하는 잉여금이 과다 발생</li> </ul>
처분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편성 시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 필요 경비만 편성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b>주의</b> 조치</li> </ul>
제목	<b>수입금 처리 부적정 (no. 3, 13)</b>
처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재)○○○○재단 사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에 따르면 공연수입금,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 당일 금고 마감시간 전에 지정하는 세입구좌에 입금조치 하고 마감시간 이후 및 공휴일의 수익금에 대하여는 익일 오전까지 입금 조치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참가 취소 등에 따른 참가비 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입금된 수입금을 직접 사용(환급)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를 준용한 세외수입 환급 규정 절차에 따라 금고에 입금된 참가비를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li> <li>또한 「○○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입장권 판매 잔량은 수불부에 기재하고, 3개월 보관 후 전량 소각하도록 규정</li> </ul>
위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수입금, 프로그램 수입금은 수납 즉시 바로 세입조치 하여야 하나 정산 후나 연말에 일괄적으로 세입하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판매하는 입장권의 경우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수불부를 작성해야 하나 이를 소홀</li> </ul>
처분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세입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 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b>시정</b> 조치</li> </ul>

제목	○○○○아트리움 대관 소홀 (no. 10)
처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트리움 대관 규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르면 ○○○○아트리움을 사용할 경우 사용시간에 따라 사용료(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에 따른 잔금(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은 사용예정일 60일전까지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추가 사용료가 있을 경우는 대관시설 사용 종료 전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관 당일 발생한 추가 사용료는 대관 종료 후 3일 이내에 완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하도록 규정</li> </ul>
위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트리움에서는 2014. ○월 ~ 2017. ○월까지 대관료 ○○○건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짧게는 12일에서 최대 297일까지 지연납부 하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중 부대시설 사용료 또한 미부과 한 경우가 있었으며, 수입금도 공연완료에 따른 정산사항 발생 등을 이유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대관료 수입금 ○,○○○천원 중 총 ○,○○○원에 대해 최대 ○○일 지연입금 또는 미 세입(과다 세입)</li> </ul>
처분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입 불일치 된 ○,○○○원의 대관 수입금에 대해서는 세입조치 하고, ○○대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b>시정 및 관련자 훈계</b> 조치</li> </ul>
제목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관리 소홀 (no. 12)
처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시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고 향후 반환기간 또는 사유가 만료된 세입세출외현금을 절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의거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후 세입 조치하도록 규정</li> </ul>
위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보증금, 월주차보증료, ○○○ 온라인예약금의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반환 또는 세입 사유가 발생(○건 ○,○○○원)한 경우 반환 및 세입조치 하여야 하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하는 등 관리 소홀</li> </ul>
처분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포기한 입찰보증금 ○,○○○원 및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사랑채 온라인 예약금 ○○○원은 세입조치 하고, RF 카드 미사용으로 인한 월주차 보증료 ○○○원은 정당한 반환 절차를 통해 정리하도록 <b>시정</b> 조치</li> </ul>

제목	「2016 제○○회 ○○○○○○○○○」 정산 부적정 (no. 16)
처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억원)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li> </ul>
위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데 회계검증을 받아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회계검증을 거치지 않고 지연 정산하였으며, 정산 결과 자부담금 일부 미집행 및 증빙자료 미첨부, 간이영수증 제출, 영수증 사본 첨부, 사용 내역 불명확 등 정산 실적보고서가 미흡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정산 승인</li> </ul>
처분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및 <b>관련자 훈계</b> 조치</li> </ul>
제목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no. 17)
처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수원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로 초청장·홍보 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등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 선물의 구입, 부서 연찬회 경비 등은 행사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li> </ul>
위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2016년 기간 동안 행사운영비 집행에 있어 예산집행 기준 및 목적에 위배되는 식비 및 다과비 사용, 상품권 구입, 기념품 제작 등 총 ○○건을 부적정하게 집행</li> </ul>
처분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을 사용하도록 <b>주의</b> 및 <b>관련자 훈계</b> 조치</li> </ul>

## □ 계약·공사 분야

제목	계약업무 처리(분리발주) 부적정 (no. 15, 19)
처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써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li> </ul>
위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일 경우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발주를 위해 노력해야 했으나 2015 ○○○○ 야간공연(○○음악회) 등 ○건의 공연을 추진하면서 무대, 음향, 조명 등을 나누어 계약을 체결</li> <li>· 2016 ○○○○ 조명시스템 및 음향시스템 용역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각각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공사 용역이 아니고 단순 음향시스템 임대업, 조명시스템 임대업으로 사업의 종류가 동일함에도 5억미만 경쟁입찰이 아닌 5천만원 이하의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분리하여 추진함에 따라 참가자격을 제한</li> <li>· 2016 ○○○○○ 메인케이블 전기간선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단일공사를 같은 시기에 발주하면서 2천만원 이하 및 5천만원 이하로 분할 발주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계약 체결하는 경우보다 약 ○,○○○천원 높은 가격으로 계약 체결</li> <li>· ○○○○○ 건물내부의 보수를 위하여 「수원제1야외음악당 3층 사무실 보수공사」를 총 공사금액 ○,○○○천원에 발주하였고 「수원제1야외음악당 연습실 보수공사」를 총 공사금액 ○,○○○천원에 발주하여 1인 수의계약으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계약 체결하는 경우보다 약 ○,○○○천원 높은 가격으로 계약 체결</li> </ul>
처분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발주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구조물 또는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분할하여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 및 관련자 훈계 조치</li> </ul>



제목	원가계산서 작성업무 소홀 (no. 20)
처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는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예정가격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그리고 표준시장단가로 인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li> </ul>
위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샷리공간 조성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그대로 발주하여 그로 인해 4천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등 관련규정에 어긋나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li> </ul>
처분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계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소홀로 부당 지급한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li> </ul>

#### 4. 모범사례

### 대·내외 협업체계 구축

- 수원문화재단 내 각 부서(실)의 고유 특성을 활용한 창의적인 융·복합 사업을 개발하고 부서(실) 간 연계성을 강화함
- 수원시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수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함

#### □ 대내 협업체계 구축

- 2016년 재단 융복합 사업 ‘콜라보로(**collābóro**)’ 오디션 시행
  - 사업기간 : 2016. 10월 ~ 2017. 2월
  - 추진내용
    - 2016. 10. 20.(목) ~ 11. 30(수) : ‘콜라보로’ 개최 알림 및 접수 완료
    - 2016. 12. 7.(수) : 재단 임직원 평가
    - 2017. 1. 23.(월) : 전문가 평가
    - 2017. 2. 21.(화) : 사업 선정 확정(총 4개 사업 선정)

#### □ 대외 협력체계 구축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력사업 추진(2017. 3월 ~ 12월)
  - 사업명 : ‘우리동네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 프로젝트’(3년 연차지원 사업)
  - 추진목적 : 비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장려와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 기관별 업무분담 내용

수원문화재단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1) 사업설명회 개최 및 홍보 2) 사업공모 및 사업계획서 심의 3) 타지역 사례조사 및 매칭지원 4) 문화예술활동 지원금 교부 5) 결과보고회 개최 6) 차년도 연차지원검토 및 마케팅지원		1) 지원사업 홍보 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행정절차 교육(4개월) 3) 공모사업 및 자문(컨설팅) 4) 사업모니터링 및 중간보고회 5) 차년도 연차지원검토 및 지원

#### □ 기대효과

- 재단 내 각 부서(실) 간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업 기회를 통해 원활한 소통 및 재단 정체성 확립에 기여
- 대외적인 업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

## 재활용 자원을 활용한 조형물 제작

- ‘2016 수원화성문화제’ 효행 등(燈)을 재활용한 작품 제작 및 상설전시를 통해 ‘2017 수원화성문화제’에 대한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아름다운 행궁길 거리 활성화 추진

###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 11월 ~ 2017. 10월(2017 수원화성문화제 까지)
- 설치장소 : 화성사업소건물 옆 노천극장
- 사업내용
  - ‘2016 수원화성문화제’기간에 사용한 효행등을 재활용하여 수원화성의 결작 중 하나인 용성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 제작
  - 그동안 폐기 또는 보관되었던 수원화성문화제의 시민참여 제작 효행등을 재활용하여 야외 상설 예술작품으로 승화

### □ 추진성과

- 조형물 ‘정조의 꿈’ 제작
  - 규 모 : 높이 6m, 지름 5m
  - ‘2016수원화성문화제’기간에 사용한 효행등 500여개 재활용



### □ 기대효과

- 공방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 및 공방거리 활성화 기대
- 조형물을 통한 ‘2017 수원화성문화제’ 홍보효과 기대

##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추진

- 수원시 지방재정개편에 따른 출연금 축소에 따라 문화예술 및 관광 등 추진사업에 대한 재단 예산의 효율적 운영 필요
- 국도비 사업에 적극 지원 및 참여하여 재단 재원확보의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함

### □ 추진개요

- 기 간 : 2017. 1월 ~ 12월
- 대 상 : 국도비 지원사업
- 주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 주요내용
  - 재원확보 : 국도비 사업 지원 및 선정
  - 사업추진 및 정산 등

### □ 추진성과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2016년	2017년	증 감	비 고
계	12건	1,743,000	2,871,510	1,128,510	
1	꿈다락토요문화학교,꼬마작곡가	50,000	0	-50,0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	상상톡톡 탐험대	0	9,510	9,51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3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1,420,000	1,790,000	370,000	중소기업청
4	화성행궁 상설한마당	66,000	88,000	22,000	문화체육관광부
5	생생문화재사업	0	50,000	50,000	문화재청
6	수원연극축제	100,000	100,000	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82,000	81,000	-1,000	경기문화재단
8	꿈다락토요문화학교	25,000	0	-25,00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9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0	45,000	45,000	중소기업청
10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	0	40,000	40,000	문화체육관광부
11	수원화성문화제	0	168,000	168,000	문화체육관광부
12	밤빛품은 성곽도시, 수원야행	0	500,000	500,000	문화재청

### □ 기대효과

- 국도비 사업의 적극 활용을 통한 재원확보 및 재단 사업의 효율적 추진